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표

2012



1. 기관 일반현황

기 관 명			
소 재 지	(-)		
관할(지)청		총인원: ____명	산업위생관리기술사: ____명
대 표 자			산업보건지도사: ____명
전화번호			산업위생관리기사: ____명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____명
지정일자	최초지정일:	변경지정일:	

2. 평가일시

평가일	2012 년 월 일
-----	------------------

3. 평가결과 획득점수

총 점			
평가항목(가중치)	점수	평가항목(가중치)	점수
1. 측정 및 시료분석 능력(15%)		2. 측정결과의 신뢰도(40%)	
3. 시설·장비의 성능(30%)		4. 그 밖의 제반사항(15%)	

4. 평가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 9항, 동법 시행규칙 제 97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1-55호에 근거하여 작업환경측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함

가. 평가반

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서 명
평가반원				
평가반원				
평가반원				

나. 평가대상기관

구 분	직 책	성 명	서 명
평가대상기관(책임자)			
평가대상기관(참여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A: 5점, B: 3점, C: 1점

구 분	세부평가 항목	가중치	평가	평가 점수
1. 작업환경측정 및 시료분석 능력				
1.1	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 자체 매뉴얼의 보유 여부	2	A,B,C	
1.2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정도관리 결과	3	A,B,C	
1.3	내부 분석 정도관리 시스템 수립 및 시행 여부	3	A,B,C	
1.4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작성, 검토(승인)의 적정 여부	1	A,B,C	
1.5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산업위생관리기술사(산업보건지도사) 보유 여부	2	A,B,C	
1.6	작업환경측정 책임자의 측정경력 년 수	2	A,B,C	
1.7	분석자의 분석경력 년 수	2	A,B,C	
평가대상기관 확인란 : ()		총점 : () / 7점		
2. 측정결과의 신뢰도				
2.1	예비조사 실시대상의 측정계획서 작성 여부	3	A,B,C	
2.2	작업환경결과표상 종합의견의 질적 수준	2	A,B,C	
2.3	개인 노출량 측정 시 지시소음계 사용 여부	1	A,B,C	
2.4	누적소음노출량계의 보정 수행 여부	2	A,B,C	
2.5	누적소음노출량계의 기기 환경설정의 적정성	3	A,C	
2.6	누적소음노출량계 산출 기록물의 보관 여부	3	A,B,C	
2.7	시료 채취 전·후 시료채취기 유량 보정 수행 및 결과 반영	3	A,B,C	
2.8	필터의 중량분석 횟수 및 대장의 적정 기록 여부	2	A,B,C	
2.9	시료채취 시간 준수 여부	1	A,C	
2.10	시료채취 개수의 준수 여부	1	A,B,C	
2.11	지역시료채취를 실시한 경우 그 사유 명시 여부	1	A,B,C	
2.12	사업장에서 시료채취 시 채취대장의 작성여부	3	A,B,C	
2.13	현장 공시료 포함 및 분석결과의 보정 여부	2	A,B,C	
2.14	검량선 작성의 적정성 여부	3	A,B,C	
2.15	시료의 탈착율(유기용제), 회수율(중금속) 실험 및 보정 수행 여부	3	A,B,C	
2.16	채취시료의 분석결과물(크로마토그램 등)의 적정 보관 여부(소음 제외)	2	A,B,C	
2.17	측정결과의 노출기준 적용의 적정성 여부	2	A,B,C	
2.18	외부분석기관 의뢰 시 해당 문서 보관 및 결과 적정 반영 여부	2	A,B,C	
2.19	시료전달 및 분석실 시료관리의 적정성 여부	1	A,B,C	
평가대상기관 확인란 : ()		총점 : () / 20점		

구 분	세부평가 항목	가중치	평가	평가점수
3. 시설·장비의 성능				
3.1	측정 장비의 사용 및 유지관리지침 보유 여부	2	A,C	
3.2	분석 장비의 사용 및 유지관리지침 보유 여부	2	A,C	
3.3	측정 장비에 대한 책임자 지정 여부	1	A,B,C	
3.4	분석 장비에 대한 책임자 지정 여부	1	A,B,C	
3.5	측정 장비대장 관리 및 기록유지의 적절성	2	A,B,C	
3.6	분석 장비대장 관리 및 기록유지의 적절성	2	A,B,C	
3.7	직독식 장비의 유지·관리에 대한 적정 여부	2	A,B,C	
3.8	법정 필수 장비에 관한 검·교정 계획 수립 여부	1	A,B,C	
3.9	법정 필수 장비(전자저울 제외)에 대한 검·교정 실시 여부	2	A,B,C	
3.10	전자저울에 대한 검·교정 실시 여부	2	A,B,C	
3.11	실험실 안전보건지침 보유 여부	1	A,B,C	
3.12	각 분석 장비별 실험실용 후드 및 흡후드 장치 설치 여부	2	A,B,C	
3.13	분석 중 배액 처리 설비의 적정 여부	1	A,B,C	
3.14	실험실내 비상용 샤워와 세안설비 보유 여부	1	A,B,C	
3.15	실험실내 가스용기 전도 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	1	A,B,C	
3.16	실험에 사용하는 시약 보관의 적정성	2	A,B,C	
3.17	실험실내 보호용구 구비의 적정 여부	2	A,B,C	
3.18	시료보관 냉장실 및 냉동실 적정 운영 여부	1	A,B,C	
3.19	실험실 내에서 흡연 및 음식물 취식 금지 여부	1	A,B,C	
3.20	실험실 내 경고표지 및 보호구 착용 표지의 적정 부착 여부	1	A,B,C	
평가대상기관 확인란 : ()		총점 : () / 15점		
4. 보유 인력의 교육이수·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의 제반사항				
4.1	측정 및 분석요원의 교육·훈련계획 등의 문서 보유 여부	1	A,C	
4.2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 문서화 여부	1	A,B,C	
4.3	작업환경측정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이수 여부	2	A,B,C	
4.4	분석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이수 여부	2	A,B,C	
4.5	측정 및 분석요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 여부	0.5	A,C	
4.6	측정기관 인력의 최근 2년간 연구실적	0.5	A,C	
4.7	측정 및 분석 인력의 자기계발 실적	0.5	A,C	
4.8	측정 및 분석 인력의 각종 학술대회 참여 실적	1	A,B,C	
4.9	자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 및 학습조직 운영 실태	0.5	A,C	
4.10	시약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보여부	2	A,B,C	
4.11	시약·물품의 선정, 구매 및 보관절차의 문서화 여부	1	A,B,C	
4.12	작업환경측정 결과 관련 기록의 보존기한 준수 및 관리상태 적정 여부	2	A,B,C	
4.13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전산자료) 송부기한 준수 여부	1	A,B,C	
평가대상기관 확인란 : ()		총점 : () / 7점		

1. 작업환경측정 및 시료분석 능력

평가항목 1.1	평가기준 (가중치: 2)	평가결과
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 자체 매뉴얼 보유 여부	모든 유해인자에 대한 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A
	일부 유해인자에 대한 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B
	매뉴얼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C
평 가 취 지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대한 기관 자체의 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 매뉴얼을 보유하여 적용함으로써 측정 및 분석 인력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측정결과의 정확성 및 정밀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함	
주요 착안사항	○ 적용 범위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 4) ○ 자체 매뉴얼에는 유해인자별로 KOSHA CODE를 포함하여 각 기관의 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방침이 문서화¹⁾되어야 하며, - 해당 유해인자별로 출력물 또는 전자문서(하이퍼링크 인정)로 보유되어야 함. (목록화 또는 색인이 되어 있어 쉽게 조회 또는 검색될 수 있어야 함) ※ KOSHA CODE, NIOSH, OSHA, HSE 또는 ISO의 공정시험법 등 1) 문서화되었다는 것은 내부품의(결재)를 득하여 일련번호를 포함한 문서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며, 이하의 평가 문항에서 “문서”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함	

평가항목 1.2	평가기준 (가중치: 3)	평가결과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 하는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건수가 없는 경우	☐ A
	1회 부적합 경험에 있는 경우	☐ B
	2회 이상 부적합 경험에 있는 경우	☐ C
평 가 취 지	○ 법 제42조제7항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정도관리야말로 작업환경측정·분석치에 대한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한 지정측정기관의 능력을 가늠하는 척도라 할 수 있음	
주요 착안사항	○ 최근 2년 이내의 국내 정도관리 실시 결과(공단 자료) 기준 - 분야별(유기화합물, 금속)로 부적합 건수를 확인하므로 동일 기간이라 하더라도 유기화합물과 금속 분야에서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부적합 2회로 간주	

평가항목 1.3	평가기준 (가중치: 3)	평가결과
분석 정도관리 내부규정 수립 및 시행 여부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적정하게 실행하는 경우	☐ A
	내부규정을 수립하고 있으나, 실행하지 않는 경우	☐ B
	내부규정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 C
평 가 취 지	○ 기관 자체적으로 가용 가능한 내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내부 분석정도관리를 수립·시행함으로써 분석결과와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함	
주요 착안사항	○ 측정기관 자체적인 분석 정도관리 내부 규정을 수립하여 문서화하여야 하며, 실행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내부 규정에는 운영체계, 관리책임자 지정, 정도관리 절차 및 결과처리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평가항목 1.4	평가기준 (가중치: 1)	평가결과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작성, 검토(승인)의 적정 여부	단계별 검토(승인) 절차가 적정한 경우	☐ A
	단계별 검토(승인) 절차가 일부 미흡한 경우	☐ B
	단계별 검토(승인) 절차가 없는 경우	☐ C
평 가 취 지	○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사업장으로 최종 발송되기 전에 분석자에 의한 분석결과 적정 반영 여부 및 관리자에 의한 측정결과보고서의 적정성 검토(승인) 절차가 체계적으로 구축됨으로써 사업장으로 송부되는 측정결과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함	
주요 착안사항	○ 측정결과표의 문서 작성자, 분석자, 검토(승인)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며, 단계별 확인(결재)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최종승인자의 확인일자 기록 필수)	

평가항목 1.5	평가기준 (가중치: 2)	평가결과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산업 위생관리기술사(산업 보건지도사) 보유 여부	기술사(산업보건지도사)를 2명 이상 보유한 경우	☐ A
	기술사(산업보건지도사)를 1명 보유한 경우	☐ B
	기술사(산업보건지도사)가 없는 경우	☐ C
평 가 취 지	○ 산업위생분야에서 고도의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는 가장 높은 등급의 자격을 법정 지정요건 이상으로 보유하도록 유도하여 측정기관 구성원들의 상위 자격 취득에 대한 자기계발 노력과 측정기관 차원에서의 지원을 독려하기 위함	
주요 착안사항	○ 산업위생관리기술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구, 산업위생지도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이와 동등한 서류가 확인되어야 하며, 해당 기관의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고용이 확인되는 서류 또한 확인되어야 함	

평가항목 1.6	평가기준 (가중치: 2)	평가결과
작업환경측정 책임자의 측정경력 년 수	경력 15년 이상인 경우	☐ A
	경력 14~10년인 경우	☐ B
	경력 10년 미만인 경우	☐ C
평 가 취 지	○ 해당 기관의 시료채취 및 분석을 책임지는 작업환경측정 책임자의 산업위생분야 경력 년 수를 평가하여 좀 더 많은 경험지식과 응용 능력을 보유하도록 유도하여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 착안사항	○ 작업환경측정 책임자(측정실장/팀장 등)의 측정경력이 해당 기관의 4대 보험 등 경력 관련 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어야 함	

평가항목 1.7	평가기준 (가중치: 2)	평가결과
분석자의 분석경력 년 수	경력 10년 이상인 경우	☐ A
	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 B
	경력 5년 미만인 경우	☐ C
평 가 취 지	○ 해당 기관의 분석자의 분석 경력 년 수를 평가하여 좀 더 많은 경험지식과 응용 능력을 보유하도록 유도하여 분석결과의 정확성 및 정밀성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 착안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 “분석을 전담으로 하는 사람” 으로 해당 기관에서 경력이 가장 오래된 분석자의 경력이 해당 기관의 4대 보험 등 경력 관련 문서를 통하여 확인되어야 함 (특수건강진단의 분석인력은 해당되지 않음)	

2. 측정결과와 신뢰도

평가항목 2.1	평가기준 (가중치: 3)	평가결과
예비조사 실시 대상의 측정계획서 작성 여부 (전회 측정 사업장 제외)	측정계획서를 항상 작성하는 경우	☐ A
	측정계획서를 가끔 작성하는 경우	☐ B
	측정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 C
평 가 취 지	(관련근거) 작업환경측정 고시 제17조	
○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예비조사 및 측정계획서 작성의 적정성을 평가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		
주요 착안사항		
고시 제17조(예비조사 및 측정계획서의 작성) ① 규칙 제9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측정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원재료의 투입과정부터 최종 제품생산 공정까지의 주요공정 도식 2. 해당 공정별 작업내용, 측정대상공정 및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실태 3. 측정대상 유해인자, 유해인자 발생주기, 종사근로자 현황 4. 유해인자별 측정방법 및 측정 소요기간 등 필요한 사항		

평가항목 2.2	평가기준 (가중치: 2)	평가결과
작업환경결과표상 종합 의견의 질적 수준	관련 규정에 준하는 기술적 수준으로 적정하게 작성된 경우	☐ A
	관련 규정에 준하는 기술적 수준이 일부 미흡하게 작성된 경우	☐ B
	평가, 실태 및 문제점, 대책 등의 항목이 일부 누락된 경우	☐ C
평 가 취 지	○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측정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 및 설비를 설치 또는 개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 작업환경측정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종합의견의 질적 수준을 평가	
주요 착안사항	○ “측정결과와 평가”, “작업환경설비 실태 및 문제점”, “대책”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 “작업환경설비 실태 및 문제점”과 “대책”은 공학적·관리적·개인위생적 측면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에 준하는 수준으로 적정하게 작성되어야 함	

평가항목 2.3	평가기준 (가중치: 1)	평가결과
개인 노출량 측정 시 지시소음계 (Sound Level Meter) 사용 여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	☐ A
	일부 사용하는 경우	☐ B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	☐ C
평가 취지	(관련근거) 작업환경측정 고시 제26조	
○ 개인 노출량 측정 시 지시소음계 사용 여부를 평가하고, 누적소음노출량계의 사용을 권고함으로써 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정확한 실 노출량 파악을 유도하기 위함		
주요 착안사항		
○ 소음 측정 시 개인 노출량 평가는 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실 노출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누적소음노출량계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		
고시 제26조(측정방법) 규칙 별표 11의4에 따른 소음수준의 측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측정에 사용되는 기기(이하 “소음계” 라 한다)는 누적소음 노출량측정기, 적분형 소음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되 개인시료 채취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시소음계를 사용할 수 있으며, 발생시간을 고려한 등가소음 레벨 방법으로 측정할 것. 다만, 소음발생 간격이 1초 미만을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하 “연속음”이라 한다)을 지시소음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기기로 측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생략)		

평가항목 2.4	평가기준 (가중치: 2)	평가결과
누적소음노출량계의 보정 수행 여부	누적소음노출량계의 보정을 적정하게 실시하는 경우	☐ A
	누적소음노출량계의 보정 수행이 일부 부적정한 경우	☐ B
	누적소음노출량계의 보정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 C
평가 취지	○ 누적소음노출량계를 사용하여 측정된 소음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표준소음발생기(Calibrator)를 통한 보정이 수행되어야 함	
주요 착안사항	○ 누적소음노출량계의 보정수행 일지(대장) 또는 누적소음노출량계에서 출력한 기록물을 통하여 보정수행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보정수행 일자 포함)	

평가항목 2.5	평가기준 (가중치: 3)	평가결과
누적소음노출량계 (Noise dosimeter) 의 기기 환경 설정의 적정성	모두 적정한 경우	☐ A
	부적정한 경우	☐ C
평 가 취 지	(관련근거) 작업환경측정 고시 제26조	
○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누적소음노출량계는 측정관련 고시 제 26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기환경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함		
주요 착안사항	고시 제26조(측정방법) 규칙 별표 11의4에 따른 소음수준의 측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생략) - 소음계의 청감보정회로는 A특성으로 할 것 - 제1호 단서규정에 따른 소음측정은 다음과 같이 할 것 가. 소음계 지시침의 동작은 느린(Slow) 상태로 한다. 나. 소음계의 지시침이 변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지시침을 그 측정점에서의 소음수준으로 한다. - 누적소음노출량 측정기로 소음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Criteria는 90dB, Exchange Rate는 5dB, Threshold는 80dB로 기기를 설정할 것 (생략)	

평가항목 2.6	평가기준 (가중치: 3)	평가결과
누적소음노출량계 산출 기록물의 보관 여부	모든 기록물이 보관되고 있는 경우	☐ A
	일부 기록물이 보관되고 있는 경우	☐ B
	기록물 보관이 미흡한 경우	☐ C
평 가 취 지	(관련근거) 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제2항	
○ 소음 측정 사업장에 대한 누적소음노출량계 산출 기록물 보관 여부를 확인하여 소음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		
주요 착안사항		
○ 누적소음노출량계를 사용하여 소음을 측정한 경우에는 측정일자가 명기된 산출 기록물을 출력하여 해당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와 함께 보관하여야 함		
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제2항 법 제64조(서류의 보존) ②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44조(서류의 보존) ②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측정 대상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측정 연월일 3. 측정을 한 사람의 성명 4. 기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분석자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등 분석과 관련된 사항		

평가항목 2.7	평가기준 (가중치: 3)	평가결과
시료 채취 전·후 시료 채취기 유량 보정 수행 및 결과 반영	유량 보정 수행 및 결과 반영이 적정한 경우	☐ A
	유량 보정 수행 및 결과 반영이 일부 부적정한 경우	☐ B
	유량 보정 수행 및 결과 반영이 미흡한 경우	☐ C
평 가 취 지	○ 개인시료채취기의 유량은 시기에 따라 변동되므로 시료채취 전·후의 유량을 측정하여 평균유량으로 보정함으로써 측정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	
주요 착안사항	○ 시료 채취 전·후 시료채취기의 유량보정 실시여부가 관련 대장을 통하여 확인되어야 하며, 보정 결과가 분석 결과에 반영되어야 함 - 대장에는 펌프기종, 일시, 유량 보정자, 보정 횟수, 유량보정 기기명, 전·후 유량, 평균유량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평가항목 2.8	평가기준 (가중치: 2)	평가결과
필터의 중량분석 횟수 및 대장의 적정 기록 여부	필터의 중량분석 횟수 및 대장 관리가 적정한 경우	☐ A
	필터의 중량분석 횟수 및 대장 관리가 일부 부적정한 경우	☐ B
	필터의 중량분석 횟수 및 대장 관리가 미흡한 경우	☐ C
평 가 취 지	○ 전자저울의 민감도가 높아 무게를 계량할 때마다 약간의 변동이 있으므로 반드시 3회 이상 계량하여 평균치를 적용함으로써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	
주요 착안사항	○ 측정 전·후 필터의 중량을 각각 3회 이상 계량하여야 하며, 관련 대장을 관리하여야 함	

평가항목 2.9	평가기준 (가중치: 1)	평가결과
시료채취 시간 준수 여부	시료채취 시간이 항상 적절한 경우	☐ A
	시료채취 시간이 부적절한 경우	☐ C
평 가 취 지	(관련근거) 작업환경측정 고시 제 18조	
	○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 18조에 의한 시료채취 시간의 준수 여부를 평가	
주요 착안사항	고시 제18조(측정시간) 측정은 1일 작업시간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 이상 연속분리 측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1일 작업시간 중 대상물질의 발생시간이 6시간 이하이거나, 불규칙작업으로 6시간 이하의 작업 또는 발생원에서의 발생시간이 간헐적인 경우에는 발생시간동안 측정한 경우 2.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 단시간 노출기준(STEL)이 설정되어 있는 대상물질로서 단시간 고농도에 노출된 경우에는 1회에 15분간, 1시간 이상의 등간격으로 4회 이상 단시간 측정한 경우 3.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 최고노출기준(Ceiling, C)이 설정되어 있는 대상물질에 대하여는 순간농도측정을 위한 기기를 이용하여 최고노출기준 값의 측정이 가능한 최소한의 시간동안 실시한 경우. 다만, 순간농도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15분간, 1시간 이상의 등간격으로 4회 이상 단시간 측정할 수 있다.	

평가항목 2.10	평가기준 (가중치: 1)	평가결과
시료채취 개수의 준수 여부	채취 시료의 개수가 항상 적정한 경우	☐ A
	채취 시료의 개수가 일부 부적정한 경우	☐ B
	채취 시료의 개수가 미흡한 경우	☐ C
평 가 취 지	(관련근거) 작업환경측정 고시 제19조	
○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 19조에 의한 시료채취 개수의 준수 여부를 평가		
주요 착안사항	고시 제19조(시료채취 근로자수) ① 단위작업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2명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되, 단위 작업장소에 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5명당 1명(1개 지점) 이상 추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시료채취 근로자수를 20명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규칙 제93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시료채취방법에 따른 측정시료의 개수는 단위작업 장소에서 2개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단위작업장소의 넓이가 50 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매 30평방미터마다 1개 지점 이상을 추가로 측정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2.11	평가기준 (가중치: 1)	평가결과
지역시료채취를 실시한 경우 그 사유 명시 여부	사유 명시가 항상 적정한 경우	☐ A
	사유 명시가 일부 부적정한 경우	☐ B
	사유 명시가 미흡한 경우	☐ C
평 가 취 지	(관련근거) 시행규칙 제 93조의3	
○ 지역시료채취를 실시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3조의3제 1항제3호에 의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사유가 인정 가능한지를 평가		
주요 착안사항	시행규칙 제93조의3제1항제3호 ① 사업주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2. (생략) 3.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21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할 것 4. (생략)	

평가항목 2.12	평가기준 (가중치: 3)	평가결과
사업장에서 시료채취 시 관련 기록의 작성여부	시료 채취 관련 기록(대장) 작성이 모두 적정한 경우	☐ A
	시료 채취 관련 기록(대장) 작성이 일부 부적정한 경우	☐ B
	시료 채취 관련 기록(대장) 작성이 미흡한 경우	☐ C
평 가 취 지	○ 시료채취시작 단계부터 분석실에 도착되는 분석의뢰 단계까지 시료채취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기록·관리하여 분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측정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	
주요 착안사항	○ 시료 채취 관련 기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 시료 채취 관련 기록에는 채취일시, 유해인자, 시료채취시간, 작업장온도, 작업장습도, 사업장명, 측정자명, 펌프명, 측정전·후 유량, 측정대상자 성명 등이 포함되어야 함	

평가항목 2.13	평가기준 (가중치: 2)	평가결과
현장 공시료 포함 및 분석결과의 보정 여부	현장 공시료를 항상 포함하여 보정하는 경우	☐ A
	현장 공시료 및 분석결과 보정이 일부 누락된 경우	☐ B
	현장 공시료 및 분석결과 보정이 미흡한 경우	☐ C
평 가 취 지	○ 시료채취 및 운반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료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현장측정용 시료와 동일한 조건으로 현장 공시료를 채취하고 이를 분석결과에 반영함으로써 측정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	
주요 착안사항	○ 시료 채취 시 현장 공시료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분석결과에 반영되어야 함	

평가항목 2.14	평가기준 (가중치: 3)	평가결과
검량선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량선 작성이 모두 적정한 경우	☐ A
	검량선 작성이 일부 부적정한 경우	☐ B
	검량선 작성이 미흡한 경우	☐ C
평 가 취 지	○ 분석기기의 감도는 분석조건 및 시기에 따라 계속 변화하므로 분석결과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석시료 셋트별로 검량선을 작성하여 농도를 결정하여야 함	
주요 착안사항	○ 시료분석 시 분석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분석시료 셋트별로 검량선을 작성하여야 하며, 분석결과가 검량선 농도 범위 내에 있어야 함	

평가항목 2.15	평가기준 (가중치: 3)	평가결과
시료의 탈착율(유기용제), 회수율(중금속) 실험 및 보정 수행 여부	실험 및 보정 수행이 모두 적정한 경우	☐ A
	실험 및 보정 수행이 일부 부적정한 경우	☐ B
	실험 및 보정 수행이 미흡한 경우	☐ C
평 가 취 지	○ 공기중 측정대상물질을 채취한 후 시료전처리과정을 통해 시료채취매체로부터 분석 대상물질이 얼마나 탈착(유기용제) 또는 회수(중금속)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장시료를 보정함으로써 분석결과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 착안사항	○ 시료분석 시 분석시료 셋트별로 시료의 탈착율(유기용제) 및 회수율(중금속) 실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분석결과에 반영되어야 함	

평가항목 2.16	평가기준 (가중치: 2)	평가결과
채취시료의 분석결과물 (크로마토그램 등)의 적정 보관 여부(소음 제외)	모든 분석결과물을 보관하는 경우	☐ A
	일부 분석결과물을 보관하는 경우	☐ B
	분석결과물 보관이 미흡한 경우	☐ C
평 가 취 지	(관련근거) 법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 144조제2항	
○ 채취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물 보관 여부를 확인하여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 하기 위함		
주요 착안사항		
○ 채취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물은 해당 측정결과표와 함께 적정하게 보관되어야 함		
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제2항 법 제64조(서류의 보존) ②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44조(서류의 보존) ②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측정 대상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측정 연월일 3. 측정을 한 사람의 성명 4. 기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분석자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등 분석과 관련된 사항		

평가항목 2.17	평가기준 (가중치: 2)	평가결과
측정결과와 노출기준 적용의 적정성 여부	평가결과와 노출기준 적용이 모두 적정한 경우	☐ A
	평가결과와 노출기준 적용이 일부 부적정한 경우	☐ B
	평가결과와 노출기준 적용이 미흡한 경우	☐ C
평 가 취 지	(관련근거) 작업환경측정 고시 제33조 부터 제38조까지	
○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적정하게 적용하는지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 33조 부터 제 38조까지의 규정 준수 여부 평가		
주요 착안사항	○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에 따라 초과 여부를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1일 작업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공정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 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 34조에 따라 노출기준을 적정 하게 보정하여야 함	

평가항목 2.18	평가기준 (가중치: 2)	평가결과
외부분석기관 의뢰 시 해당 문서 보관 및 결과 적정 반영 여부	문서 보관 및 결과 반영이 적절한 경우	☐ A
	문서 보관 및 결과 반영이 일부 부적절한 경우	☐ B
	문서 보관 및 결과 반영이 미흡한 경우	☐ C
평 가 취 지	○ 외부 분석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시료의 분실 없이 정확하게 인계·인수되어 분석결과에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기관간의 공식적인 문서교환 및 보관의 적정성)를 평가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	
주요 착안사항	○ 석면, 유리규산, TDI 등 시료 분석을 외부분석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는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분석결과를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함	

평가항목 2.19	평가기준 (가중치: 1)	평가결과
시료 전달 및 분석실 시료관리의 적정성 여부	시료 전달 및 분석실 시료관리가 적절한 경우	☐ A
	시료 전달 및 분석실 시료관리가 일부 부적절한 경우	☐ B
	시료 전달 및 분석실 시료관리가 미흡한 경우	☐ C
평 가 취 지	○ 측정팀으로부터 의뢰받은 시료가 분석되어 최종분석결과보고서가 나가는 단계까지 시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측정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	
주요 착안사항	○ 측정자가 분석자에게 시료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측정정보를 함께 전달하여야 하며, 분석실에서는 해당 시료를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함 - 시료분석의뢰 및 분석실의 시료는 문서로 관리되어야 하며, 관련 서류에는 측정자(시료 인계자), 분석자(시료 인수자), 시료도착일, 시료상태 및 보존방법, 분석대상 물질, 분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함	

3. 시설 · 장비의 성능

평가항목 3.1	평가기준 (가중치: 2)	평가결과
측정 장비의 유지 관리 지침 보유 여부	측정 장비에 대한 유지 관리지침이 있는 경우	☐ A
	측정 장비에 대한 유지 관리지침이 없는 경우	☐ C
평 가 취 지	○ 측정 장비의 적절한 유지 및 관리를 통하여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함	
주요 착안사항	○ 모든 측정 장비에 대하여 유지관리지침²⁾을 보유하여야 함 2) 유지관리지침에는 관리조직, 구입계획 수립 및 시행, 점검 및 관리, 검 · 교정, 불용결정, 손상실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평가항목 3.2	평가기준 (가중치: 2)	평가결과
분석 장비의 유지 관리 지침 보유 여부	분석 장비에 대한 유지 관리지침이 있는 경우	☐ A
	분석 장비에 대한 유지 관리지침이 없는 경우	☐ C
평 가 취 지	○ 분석 장비의 적절한 유지 및 관리를 통하여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함	
주요 착안사항	○ 모든 분석 장비에 대하여 사용방법 및 유지관리지침²⁾을 보유하여야 함	

평가항목 3.3	평가기준 (가중치: 1)	평가결과
측정 장비에 대한 책임자 지정 여부	장비별 관리 책임자 ³⁾ 가 지정된 경우	☐ A
	장비별 관리 책임자가 일부 지정된 경우	☐ B
	장비별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 C
평 가 취 지	○ 측정 장비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관련 장비의 유지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	
주요 착안사항	○ 측정 장비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장비 매뉴얼 또는 장비대장에 명시하여야 함 3) 관리 책임자 : 장비의 운용 및 관리(유지·보수)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자	

평가항목 3.4	평가기준 (가중치: 1)	평가결과
분석 장비에 대한 책임자 지정 여부	장비별 관리 책임자 ³⁾ 가 지정된 경우	☐ A
	장비별 관리 책임자가 일부 지정된 경우	☐ B
	장비별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 C
평 가 취 지	○ 분석 장비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관련 장비의 유지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	
주요 착안사항	○ 분석 장비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장비 매뉴얼 또는 장비대장에 명시하여야 하며, 각 분석 장비에 해당 표찰을 부착하여야 함	

평가항목 3.5	평가기준 (가중치: 2)	평가결과
측정 장비대장 관리 및 기록유지의 적절성	모든 장비에 대한 기록유지가 적절한 경우	☐ A
	일부 장비에 대한 기록유지가 부적절한 경우	☐ B
	장비에 대한 기록유지가 미흡한 경우	☐ C
평 가 취 지		
○ 측정 장비의 정확한 사용방법 및 적절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측정 결과의 정확도와 정밀도 향상시키기 위함		
주요 착안사항		
○ 주요 측정 장비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동일한 모델의 장비별 (구입년월일이 동일한 장비)로 장비의 용도, 구입, 수리 및 점검일자 등이 기록된 장비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장비에 대한 사진 포함) - 대상 측정 장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정하는 측정 장비로 개인 시료채취기 set(유량보정기 포함), 검지관, 지시소음계, 누적소음노출량계, 조도측정기, 온도·습도, 기류·고열 측정 기기(WBGT 등), 산소농도측정기, 국소배기시설 성능 시험장비[스모크테스터, 청음기 또는 청음봉, 전열저항계, 표면온도계 또는 초자온도계,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회전계(R.P.M 측정기)] 등이 해당됨		

평가항목 3.6	평가기준 (가중치: 2)	평가결과
분석 장비대장 관리 및 기록유지의 적절성	모든 장비에 대한 기록유지가 적절한 경우	☐ A
	일부 장비에 대한 기록유지가 부적절한 경우	☐ B
	장비에 대한 기록유지가 미흡한 경우	☐ C
평 가 취 지		
○ 분석 장비의 정확한 사용방법 및 적절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측정 결과의 정확도와 정밀도 향상시키기 위함		
주요 착안사항		
○ 주요 분석 장비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동일한 모델의 장비별 (구입년월일이 동일한 장비)로 해당 장비의 용도, 구입, 수리 및 점검일자 등이 기록된 장비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장비에 대한 사진 포함) - 대상 분석 장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정하는 분석 장비로 전분광 광도계, 저울, 건조기 및 데시케이터,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 원자흡광광도계(AAS)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ICP),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TDI), X선 회절분석기 또는 적외선분광분석기(유리규산), 위상차현미경(석면) 등이 해당됨		

평가항목 3.7	평가기준 (가중치: 2)	평가결과
직독식 장비의 유지·관리에 대한 적정 여부	직독식 장비의 유지·관리가 적정한 경우	☐ A
	직독식 장비의 유지·관리가 일부 부적정한 경우	☐ B
	직독식 장비의 유지·관리가 부적정한 경우	☐ C
평 가 취 지	○ 직독식 장비의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	
주요 착안사항	○ 산소농도측정기, 열선풍속계, 조도계, WBGT 등 직독식 장비는 항상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관리하여야 함 (산소농도측정기의 경우 주기적인 센서 교환 필요)	

평가항목 3.8	평가기준 (가중치: 1)	평가결과
법정 필수 장비에 관한 검·교정 계획 수립 여부	모든 법정 필수 검·교정 장비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교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경우	☐ A
	일부 법정 필수 검·교정 장비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교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경우	☐ B
	검·교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 C
평 가 취 지	○ 측정 결과의 정확도와 직접 연관이 있는 장비의 검·교정에 대한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음	
주요 착안사항	○ 법정 필수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검·교정 계획을 수립하여 문서로 보관하여야 함 - 대상 장비 : 유량계(공기시료채취기 Calibrator), 표준소음발생기(누적소음노출량계 Calibrator), 열선풍속계, 전자저울(또는 표준 분동) - 검·교정 계획 문서에는 “기관 보유 장비 중 검·교정 대상 장비 목록, 장비별 검·교정 주기, 해당 장비별 검·교정 가능 의뢰기관 현황”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검·교정 주기는 운영 가이드에서 권고하는 기준을 참조하여 기관 자체적으로 설정	

평가항목 3.9	평가기준 (가중치: 2)	평가결과
법정 필수 장비(전자저울 제외)에 대한 검·교정 실시 여부	대상 장비 전부에 대하여 검·교정을 실시한 경우	☐ A
	대상 장비 중 일부에 대하여 검·교정을 실시한 경우	☐ B
	검·교정 실시가 미흡한 경우	☐ C
평 가 취 지	○ 수립된 검·교정 계획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검·교정을 실시하여 측정과 관련된 장비의 정확성을 유지·향상 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주요 착안사항	○ 대상 측정 장비의 정기적인 검·교정이 실시되어야 함 - 검·교정 대상 측정 장비 : 유량계, 표준소음발생기, 열선풍속계	

평가항목 3.10	평가기준 (가중치: 2)	평가결과
전자저울에 대한 검·교정 실시 여부	대상 장비 전부에 대하여 검·교정을 실시한 경우	☐ A
	대상 장비 중 일부에 대하여 검·교정을 실시한 경우	☐ B
	검·교정 실시가 미흡한 경우	☐ C
평 가 취 지	○ 수립된 검·교정 계획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검·교정을 실시하여 분석과 관련된 장비의 정확성을 유지·향상 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주요 착안사항	○ 대상 전자저울의 정기적인 검·교정이 실시되어야 함 - 전자저울 검·교정, 검·교정을 받은 표준분동을 활용한 자체 2차 교정, 공인기관의 2차 검·교정 자격을 인증 받은 판매회사를 통해 2차 교정한 경우 모두 인정 가능	

평가항목 3.11	평가기준 (가중치: 1)	평가결과
실험실 안전보건지침 보유 여부	실험실 안전보건 지침이 문서화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 A
	실험실 안전보건 지침이 문서화되어 있으나,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경우	☐ B
	실험실 안전보건 지침이 문서화되지 않은 경우	☐ C
평 가 취 지	(관련근거) 법 제23조 내지 제24조, KOSHA CODE(G-7-2006)	
○ 측정과 관련된 실험실 등에서 실험 중에 취해야 하는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험실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함		
주요 착안사항	○ 실험실 안전보건지침을 보유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상태를 확인하여야 함 - 안전보건 지침에는 화학물질의 누출이나 전기설비의 누전 등 사고 시 행동요령, 각 분석 장비별 실험실용 후드장치 설치, 분석용 유해물질의 배기 또는 배액처리, 비상용 샤워와 세안설비, 가스용기 전도 방지를 위한 조치, 실험실내 착용 가능한 전용 보호용구의 구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평가항목 3.12	평가기준 (가중치: 2)	평가결과
각 분석 장비별 실험실용 후드 및 흡후드 장치 설치 여부	후드가 설치되고 적정하게 배기되는 경우	☐ A
	후드는 있으나 배기상태가 부적정한 경우	☐ B
	후드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C
평 가 취 지	(관련근거) 안전보건규칙 제429조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국소배기장치 설치 실태를 파악하고 해당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경우 제어풍속을 확인함으로써 유기화합물과 금속을 취급하는 실험실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주요 착안사항		
○ 분석 장비별로 실험실용 후드가 설치되어야 하며, 분석실 내부 흡후드의 제어풍속이 적정하게 유지되어야 함(제어풍속 : 0.4m/s)		

평가항목 3.13	평가기준 (가중치: 1)	평가결과
분석 중 배액(폐액) 처리 설비의 적정 여부	별도의 배액(폐액) 처리 설비가 있거나, 배액(폐액) 수거통이 있고 관련 처리실적이 있는 경우	☐ A
	배액(폐액) 수거통이 있으나 관련 처리실적이 없는 경우	☐ B
	배액(폐액) 수거통이 없고, 관련 처리실적도 없는 경우	☐ C
평 가 취 지	(관련근거) 시행규칙 제 95조 및 별표 12	
○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이로 인한 실험실 종사자의 건강 장애를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함		
주요 착안사항	○ 분석 중 발생하는 배액(폐액) 처리를 위한 설비를 구비하거나,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 위탁 처리를 위한 배액(폐액) 수거통은 유기용제용, 중금속용, 산/알칼리용을 구분하여 별도의 배액(폐액) 수거통을 사용하여야 함	

평가항목 3.14	평가기준 (가중치: 1)	평가결과
실험실내 비상용 샤워와 세안설비 보유 여부	비상용 샤워와 세안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A
	비상용 샤워와 세안설비 중 일부를 보유하는 경우	☐ B
	비상용 샤워와 세안설비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	☐ C
평 가 취 지	(관련근거) 안전보건규칙 제465조	
○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각종 화학물질이 누출되거나 배출되어 신체에 접촉되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비상용 샤워설비와 세안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실험실 종사자의 사고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함		
주요 착안사항		
○ 비상용 샤워와 세안설비가 실험실 내부 또는 외부 (긴급 상황에서 10초 이내에 도달 가능한 곳)에 설치되어야 하며, 적정하게 작동되어야 함		

평가항목 3.15	평가기준 (가중치: 1)	평가결과
실험실내 가스용기 전도 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	모든 가스용기에 전도방지 조치를 한 경우	☐ A
	가스용기에 전도방지를 일부만 조치한 경우	☐ B
	가스용기에 전도방지를 전혀 조치하지 않은 경우	☐ C
평 가 취 지	(관련근거) 안전보건규칙 제234조	
○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각종 가스용기의 전도로 인한 폭발 등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이로 인한 사고 및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주요 착안사항		
○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가스용기는 별도의 저장 공간에 적정하게 보관되어야 하며, 실험실내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모든 가스용기에는 전도 방지 조치가 실시되어야 함		

평가항목 3.16	평가기준 (가중치: 2)	평가결과
실험에 사용하는 시약 보관의 적정성	시약을 국소배기 또는 자체정화설비가 설치된 시약장에 보관하는 경우	☐ A
	국소배기 또는 자체정화설비가 설치된 시약장은 없으나 실험실과 분리된 장소에 시약을 보관하는 경우	☐ B
	국소배기 또는 자체정화설비 없이 실험실내에 보관하는 경우	☐ C
평 가 취 지	(관련근거) 안전보건규칙 제443조, 제461조	
○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각종 시약을 적정하게 보관하여 실험실 내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실험실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주요 착안사항	○ 분석용 시약은 사람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실험실과 분리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하며, 시약장에는 국소배기 또는 자체정화설비가 설치되어야 함	

평가항목 3.17	평가기준 (가중치: 2)	평가결과
실험실내 보호용구 구비의 적정 여부	모든 보호용구를 분석실 인원수에 맞도록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경우	☐ A
	모든 보호용구를 구비하고 있으나, 보유개수가 인원수에 못 미치는 경우	☐ B
	보호용구 구비 상태가 일부 미흡한 경우	☐ C
평 가 취 지	(관련근거) 안전보건규칙 제450 조, 제451 조, 제469 조, 제470 조	
○ 실험실에서 노출될 수 있는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보호용구를 구비하고 비상시에 착용함으로써 실험실 종사자의 안전사고 및 건강장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주요 착안사항		
○ 실험실내에는 사용할 수 있는 보호용구가 인원수에 맞도록 구비되어야 함 - 보호용구 : 보안경,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유기용제용 장갑, 실험복 등의 전부		

평가항목 3.18	평가기준 (가중치: 1)	평가결과
시료보관 냉장실 및 냉 동실 적정 운영 여부	냉장실 및 냉동실에 시료 이외의 것이 보관되어 있지 않는 경우	☐ A
	냉장실 또는 냉동실에 시료 이외의 것이 보관 되어 있는 경우	☐ B
	냉장실과 냉동실 모두에 시료이외의 것이 보관 되어 있는 경우	☐ C
평 가 취 지	○ 실험실에서 취급되는 시료가 보관된 냉장실 및 냉동실에 시료 이외에 각종 시약, 음식물, 음료 등을 공동으로 보관함에 따른 교차오염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주요 착안사항	○ 시료보관용 냉장실 및 냉동실에는 시료 이외의 음료, 음식물 등이 보관되지 않아야 함	

평가항목 3.19	평가기준 (가중치: 1)	평가결과
실험실 내에서 흡연 및 음식물 취식 금지 여부	실험실 내 흡연 및 음식물 취식 등의 금지 표지가 적정하게 부착되어 이행되고 있는 경우	☐ A
	실험실 내 금지 표지는 부착되어 있지 않지만 흡연 및 음식물 취식 금지가 이행되고 있는 경우	☐ B
	실험실 내에서 흡연 또는 음식물 취식(보관 포함)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C
평 가 취 지	(관련근거) 안전보건규칙 제447조, 제458조	
○ 실험실 내에서의 흡연 및 음식물 취식을 금지함으로써 실험실 내 시료의 오염을 막고 실험실 종사자의 안전사고 및 건강장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주요 착안사항		
○ 실험실 내에서는 흡연 및 음식물 취식 또는 보관(취사도구 포함)이 금지되어야 하며 흡연 및 음식물 취식 금지 표지가 부착되어야 함		

평가항목 3.20	평가기준 (가중치: 1)	평가결과
실험실 내 경고표지 및 보호구 착용 표지의 적정 부착 여부	실험실 내 유해물질 보관 및 취급 장소에 경고 표지가 적정하게 부착되어 있는 경우	☐ A
	실험실 내 경고표지 부착이 일부 누락된 경우	☐ B
	실험실 내 경고표지가 전혀 부착되지 않은 경우	☐ C
평 가 취 지	(관련근거)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고표지 및 보호구 착용 표지 적정 부착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실험실 종사자의 안전사고 및 건강장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주요 착안사항		
○ 실험실 내에는 유해물질 경고표지 및 보호구 착용 표지가 적정하게 부착되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의 안전·보건표지		

4. 보유 인력의 교육이수·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의 제반사항

평가항목 4.1	평가기준 (가중치: 1)	평가결과
측정 및 분석요원의 교육·훈련계획 등의 문서 보유 여부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한 경우	☐ A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 C
평 가 취 지	○ 측정기관의 측정 및 분석 요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유도하여 측정 및 분석 요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주요 착안사항	○ 측정 및 분석요원의 교육·훈련계획이 문서로 수립되어 적정하게 이행되어야 함	

평가항목 4.2	평가기준 (가중치: 1)	평가결과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 문서화 여부	기관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경우	☐ A
	하나만 문서화되어 있는 경우	☐ B
	둘 다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	☐ C
평 가 취 지	○ 측정기관의 측정 및 분석 업무의 흐름에 따른 조직도 및 업무 분장 작성을 통하여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유도하기 위함	
주요 착안사항	○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이 문서로 작성되어야 함 - 조직도의 경우 측정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총괄책임자, 작업환경 측정의 계획, 결과 평가에 관한 책임자, 정도관리 책임자 등도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함	

평가항목 4.3	평가기준 (가중치: 2)	평가결과
작업환경측정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 이수 여부	모든 측정인력이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 A
	일부 측정인력이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 B
	측정인력의 전문교육 이수 실적이 미흡한 경우	☐ C
평 가 취 지	○ 측정 인력의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문교육 이수를 유도하여 측정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주요 착안사항	○ 모든 측정 인력은 2년에 1회 이상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측정 직무와 관련된 교육(통계를 포함한 산업위생분야)으로 1회당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의미하며,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참석 시간을 합산하여 4시간당 1회로 인정	

평가항목 4.4	평가기준 (가중치: 2)	평가결과
분석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이수 여부	모든 분석인력이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 A
	일부 분석인력이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 B
	분석인력의 전문교육 이수 실적이 미흡한 경우	☐ C
평 가 취 지	○ 분석 인력의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문교육 이수를 유도하여 분석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주요 착안사항	○ 모든 분석 인력은 2년에 1회 이상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분석 직무와 관련된 교육으로 1회당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의미하며,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참석 시간을 합산하여 4시간당 1회로 인정	

평가항목 4.5	평가기준 (가중치: 0.5)	평가결과
측정 및 분석요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 여부	기관장이 지원한 실적이 있는 경우	☐ A
	기관장이 지원한 실적이 없는 경우	☐ C
평 가 취 지	○ 측정 및 분석요원의 국가자격 및 상위학위 취득을 위한 측정기관 차원에서의 시간적 배려 또는 금전적 지원 등이 포함된 시스템을 보유하도록 유도하여 측정 및 분석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주요 착안사항	○ 전문인력의 능력개발을 위한 기관차원의 지원책이 문서화되어 있는 경우를 말함 - 측정·분석요원의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시간적 배려, 대학 등의 강의 활동 지원, 학원 수강시 금전적 지원 등	

평가항목 4.6	평가기준 (가중치: 0.5)	평가결과
측정기관 인력의 최근 2년간 연구실적	연구실적이 있는 경우	☐ A
	연구실적이 없는 경우	☐ C
평 가 취 지	○ 국내·외 산업보건 관련 학술대회 학술지 게재 및 학술대회 발표를 포함한 측정기관 인력의 연구 활동을 유도하여 측정 및 분석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주요 착안사항	○ 학회지 및 학술대회 연제집 등을 포함한 측정기관 인력의 연구 실적물을 말함 - 산업보건 관련학회(한국산업위생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학회, 예방의학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 실내공기질학회, 독성학회 등)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게재 실적물	

평가항목 4.7	평가기준 (가중치: 0.5)	평가결과
측정 및 분석 인력의 자기개발 실적	자기개발 실적이 있는 경우	☐ A
	자기개발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 C
평 가 취 지	○ 측정 및 분석요원의 상위학위 및 국가자격 취득을 유도하여 측정 및 분석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주요 착안사항	○ 측정·분석 인력이 상위학위를 취득하거나 업무관련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를 말함 - 엑셀, 엑세스, 파워포인트 등 컴퓨터 활용능력 관련 교육 이수증도 인정	

평가항목 4.8	평가기준 (가중치: 1)	평가결과
측정 및 분석 인력의 각종 학술대회 등 참여 실적	측정 및 분석 인력의 관련 학회 참석 실적이 우수한 경우	☐ A
	측정 및 분석 인력의 관련 학회 참석 실적이 보통인 경우	☐ B
	측정 및 분석 인력의 관련 학회 참석 실적이 미흡한 경우	☐ C
평 가 취 지	○ 새로운 측정·분석 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국내·외 산업보건 관련 학술대회에 참석을 유도하여 측정 및 분석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주요 착안사항	○ 직무교육(평가항목 4.3, 4.4)을 제외한 산업보건 분야의 학술대회, 세미나 등으로 해당 기관에 재직 중 참여한 실적(학술대회 등에 참여 후 퇴사한 인력을 포함)을 말함	

평가항목 4.9	평가기준 (가중치: 0.5)	평가결과
자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 및 학습조직 운영 실태	자체 세미나 또는 학습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 A
	자체 세미나와 학습조직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 C
평 가 취 지	○ 측정기관 내부에 자체 세미나 또는 학습조직 운영을 유도하여 측정 및 분석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주요 착안사항	○ 측정기관 내부에 측정 및 분석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 또는 학습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를 말함 (운영실적과 내용이 문서화되어야 함)	

평가항목 4.10	평가기준 (가중치: 2)	평가결과
시약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확보 여부	시약의 MSDS 자료 보유가 적정한 경우	☐ A
	시약의 MSDS 자료 보유가 일부 부적정한 경우	☐ B
	시약의 MSDS 자료 보유가 미흡한 경우	☐ C
평 가 취 지	(관련근거) 법 제41조	
	○ 분석에 사용되는 시약에 대하여 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제도의 이행 실태를 평가함으로써 분석 인력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함	
주요 착안사항	○ 시약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보유하여야 함 (전산화된 경우도 인정)	

평가항목 4.11	평가기준 (가중치: 1)	평가결과
시약·물품의 선정, 구매 및 보관절차의 문서화 여부	모든 시약 및 물품에 대하여 구매일자, 구매수량 등이 기록되어 있는 보관대장(파일)을 보유하는 경우	☐ A
	일부 시약 및 물품에 대하여 구매일자, 구매수량 등이 기록되어 있는 보관대장(파일)을 보유하는 경우	☐ B
	전혀 문서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C
평 가 취 지	○ 측정 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약 및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하여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함	
주요 착안사항	○ 시약·물품 등의 선정, 구매, 보관에 대한 대장(전자파일) 등이 작성·관리되어야 함	

평가항목 4.12	평가기준 (가중치: 2)	평가결과
작업환경측정 결과 관련 기록의 보존기한 준수 및 관리상태 적정 여부	기록의 보존기한 준수 수준이 적정한 경우	☐ A
	기록의 보존기한 준수 수준이 일부 부적정한 경우	☐ B
	기록의 보존기한 준수 수준이 미흡한 경우	☐ C
평 가 취 지	(관련근거) 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제2항	
	○ 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의 보존기간의 준수 여부 평가	
주요 착안사항	○ 법 제64조(서류의 보존) ②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144조(서류의 보존) ②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측정 대상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측정 연월일 3. 측정을 한 사람의 성명 4. 기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분석자·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등 분석과 관련된 사항	

평가항목 4.13	평가기준 (가중치: 1)	평가결과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전산자료) 송부기한 준수 여부	송부기한을 준수 수준이 적절한 경우	☐ A
	송부기한을 준수 수준이 일부 부적절한 경우	☐ B
	송부기한을 준수 수준이 미흡한 경우	☐ C
평 가 취 지	(관련근거) 법 제4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전산자료) 송부기한 준수 여부 평가	
주요 착안사항	○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전산자료)는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39조(작업환경측정결과의 보고)에 명시된 송부기한이 준수되어야 함	